

소장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 외18

피고 조선일보사 외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 고 1. 2004총선시민연대

대표자 박상증

2. 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대표자 강병기

3. 광양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양신태

4.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자 정인경

5. 녹색연합

대표자 박영신

6.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자 김용우

7. 문화연대

대표자 이동연

8.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자 이명순

9.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자 김영호

10.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대표자 박인혜, 한우섭

11. 여수 기독교청년회

대표자 최연석

12.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자 유종순, 이승규

13.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자 김동민

14.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자 이강실

15.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자 박경양

16. 참여자치21

대표자 민형배

17.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8.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자 정강자

1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자 죄 열, 임길진, 신인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 범 석, 정 연 순, 유 기 성, 백 승 헌

피 고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 상 훈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대표이사 김 찬

3. 주 용 중

4. 이 길 성

5. 김 창 균

6. 정 우 상

7. 박 민 선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에게 금5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들

원고 2내지19는 시민단체들이고,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는 2004년 원고 2내지19를 포함하여 총 329개의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결성된 연합단체로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낡고 부패한 한국정치를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식의 유권자 운동인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 활동하여 왔습니다(갑제1호증의 1내지19 각 참조).

나. 피고들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이하 조선일보라고 함)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이하 디지털조선일보라고 함)는 피고 조선일보로부터 기사를 받아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전송하는 인터넷신문사이며, 피고 주용중, 이길성, 김창균, 정우상, 박민선은 각 피고 조선일보사의 기자입니다(갑제2호증의 1,2 각 참조).

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들의 기사 게재 사실

피고 조선일보는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 조선일보 2004. 9. 1.자 1, 2, 3면 및 2004. 9. 2.자 1면 및 사설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이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은 2003년도 결산보고서와 상세내역서를 피고들이 취합한 결과라며 정부 각 부처가 시민단체들에게 지출한 지출내

역과 관련하여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디지털조선일보는 아래 기사들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하였습니다(갑제3호증의 1내지5, 갑제4호증의 1내지6 각 참조).

정부, 565개 시민단체(NGO)에 지난해 411억원 줬다(2004. 9. 1.자 1면, 피고 주용중, 이길성 작성)

정권비판 신문 공격에 앞장선 시민단체 2곳 정부가 수억 집중지원(같은 날 2면, 피고 주용중 작성)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같은 날 3면, 피고 김창균 작성)

“어떤 질문에도 답 못해” 민언련 등 일부 관련단체(같은 날 3면, 피고 이길성 작성)

시민단체에 411억... ‘아끼없이 퍼주는 혈세’(같은 달 2. 자 1면, 피고 정우상, 박민선 작성)

시민단체 옥석을 가릴 때다(같은 날 사설)

이상과 같은 제목 하에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먼저 2004. 9. 1.자 조선일보 제 1면에 ‘낙선운동단체들도 돈 받아.. 정당성 논란’이라고 소제목을 게재한 후, “총선시민연대 가입 등으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해 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 언론정책을 앞장 서 지원해 온 언론단체들도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 이들에 지원되는 예산만 한 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 예산지원의 기준이 무엇인

지 불투명하다”고 언급하고, 다시 2면에서는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큰 제목 하에 각 총선시민연대 소속 단체들에게 지출된 정부지원금의 내역을 (그 명목이나 지출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시민단체가 지방조직 단위로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형태는 두 가지였다. 우선지원은 중앙본부가 받고, 총선연대엔 지방조직들이 참여한 경우다..(중략)..지방조직이 직접 재정지원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중략).. 방송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청주 YWCA가 각각 지방조직 단위로 낙선운동에 나섰다”라고 게재하여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총선시민연대 소속의 단체들이 낙선운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인상을 갖게 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이어 다음날에는 ‘시민단체에 411억.. ‘아낌없이 퍼주는 혈세”라고 하여 마치 정부에서 지출된 돈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 후 동일자 사설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전문분야보다는 정치활동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사실상의 정치단체가 주류다. ..(중략)... 이번 국회자료로 이들 단체들이 정부의 돈을 얻어 쓰면서 이런 정치 활동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났다. ... (중략)... 권력과 시민단체의 유착은 권력이 먼저 돈으로 유혹 했는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자신의 활동과 정부지원을 맞바꿨는지 애매할 정도로 깊고도 어두컴컴한 관계다. 민주 언론운동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권력을 비판하는 비판신문을 비판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단체다. 신문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자거나 판매부수가 많은 신문의 주주지분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이들이 먼저 꺼내고, 정부 여당은 이런 여론을 따라가는 척하는 위장수법을 써 왔다”라고 하여 원고들이 정부여당권력과 돈을 매개로 깊은 유착관계에 있

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사내용은 공정성, 도덕성,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 할 것인 바, 그 근거와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명예훼손 해당 여부

(1) 명예훼손 해당 여부의 판단에 관한 원칙

언론매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그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언론매체의 기사작성방식과 명예훼손에 관하여 대법원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지의 여부는 일반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0208)”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 6203)”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출과 그 배경, 기준

피고들의 명예훼손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본 기사의 소재감이 되었던 정부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교부금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들이 위 기사에서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정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시민단체들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재정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된 금원들은 모두 시민단체가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통합을 위해 수행하는 공익적인 프로젝트의 대가로 시민단체들에게 지원된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일들을 시민단체들이 대신 수행하며 그 프로젝트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수수관계는 어디까지나 국가와 해당 단체의 계약관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수행은 1994년 김영삼정부 하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으로서, 시민운동의 성과와 자발성을 정부의 영역에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개선하며 시민운동의 역량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당시 시민단체들과 언론들로부터 모두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역시 1994. 7. 26.자 보도에 ‘정부, 13개 시민단체 지원키로 ... 민관 협력한 새 운동방식 될 듯’이라는 제목하에 “정부가 시민운동단체와 계약을 맺고 예산을 지원, 자발적인 운동을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협력 운동방식이 첫선을 보이게 됐다 ... 정부의 민관협력 사회운동은 새마을운동본부 등 특정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예산지원 폐지방침이 확정되면서 시민운동단체와 계약을 통한 새로운 민주도 방식의 사회개혁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갑제5호 중 조선일보 1994. 7. 26.자 기사 참조).

현재 정부 각 부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시민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의 각종 보조금에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일반 법으로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합니다)이 있으며 2001. 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어 시민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되어 있으며, 각 그 적용요건에 사소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는 특정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보조금법 제4조 제1,2항, 제16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8조), ② 시민단체는 허위의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신청한 특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 당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까지 받게 됩니다. 시민단체 등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관할 행정 관청에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40조, 제41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2조, 제13조).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요경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이를 위하여 매년 비공익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 사업의 유형을 결정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합니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 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제7조 제1,2항).

결론적으로,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시민단체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정부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시민단체가 지향하는 활동 방향 및 그 내용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그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일 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각각 후원자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정부의 금원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민단체 활동의 하나로서 활동 상근가와 기타 전문가들이 정부사업을 ‘용역’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금원의 100%가 엄격한 회계감사를 통하여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것이지, 별도로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금원은 원고들의 경우 일절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나아가, 피고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원고 2004총선연대의 활동 역시 정부 지원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활동비용은 참가단체들의 자발적 분담금 및 국민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었으며, 경비관련 수입·지출내역은 이미 공개된 바 있어 총선연대의 활동이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갑제6호증 총선연대 회계 내역 참조).

원고 2004총선연대가 3개월의 활동기간 중 사용한 재정은 합계 2,400여 만원인데, 이 중 참여단체의 각 분담금으로 들어 온 돈은 850여 만원에 불과하며, 합숙회의와 행사 등을 통해 참가비로 걷은 돈이 250여 만원, 온라인 시민후원금 600여 만원이었고, 나머지 부족한 700여 만원은 결성을 제안한 참여연대가 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이 낙선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사실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원고 2004 총선연대가 어떠한 특정의 당파나 정략을 위하여 활동한 바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3) 의도적 연결방식과 배치로 구성된 기사 전체의 명예훼손 사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들은 위 기사에서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 참가단체들이나 언론단체에 지원된 돈이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었으며 실제로 어떤 명목에 사용되었는지,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원고들의 낙선운동이나 언론운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들 중의 일부(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낙선운동 및 언론운동을 하는 단체들 중 위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있다는 사실)만 취사선택한 후, 그 문구를 교묘히 연결하는 방식(“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으로 정부 보조금이 마치 낙선운동이나 언론운동에 사용되었거나 정부가 낙선운동 또는 언론운동을 한 시민단체를 직접 지원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들의 의도적인 기사문구 배치는 그 효과를 발휘하여 조선일보의 독자란이나 인터넷 독자란에 ‘어용단체로 변질되었다’거나 ‘국민의 혈세를 노정권의 어용집단에 퍼주었다’는 식의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와 그에 참가한 다른 원고들의 낙천·낙선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성과가 폄하당하였으며, 원고 민주언론운동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신문 개혁을 비롯한 언론개혁운동의 정당성이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정부 보조금을 매개로 권력과 깊이 유착되어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시민단체인 원고들의 활동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중립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는 바, 이와

같이 이 기사 전체의 취지와 그 연결방식 그 자체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개의 기사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식적인 배치 하에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다음 항과 같습니다.

(4) 개별적 기사문구에 대한 검토

(가) 2004. 9. 1.자 1면 신문기사(갑제3호증의 1 참조)

1) “정부, 565개 시민단체에 지난해 411억원 줬다”

피고들은 정부 예산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411억원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411억원은 정부 일반회계예산 115조 1,300억원 대비 0.036%로 선진 유럽 및 세계 각국에 비교하였을 때 한국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는 시민단체에 대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정적, 세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국가와 공공기관만으로는 시민사회 의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으며, 민간이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 단체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회는 각국 정부에 GNP대비 0.3%를 시민단체지원금 권고안으로 제시할 만

큼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확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이제 겨우 제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은 숨긴 채 마치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꾀 주기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2) “총선 시민연대 가입 등으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해온 일부 시민단체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피고들은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보조금의 성격 및 집행절차)에 대한 보도를 생략함으로써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두 개의 사실(정부의 원고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원고들의 낙선운동)을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3) “각 부처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 내역 전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들은 마치 지금까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예산 내역의 공개도 없이 비밀리에 이루어져 온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국민 누구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일례로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의 상설적인 협의기구인 소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는 2003.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하여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현황 목록을 입수한 바 있으며(갑제7호증 2003년 정부지원금 실태 정보공개 자료 참조),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 4. 24. 보도자료를 통해 2003 민간단체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이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갑제8호증의 1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갑제8호증의2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출력물 각 참조). 피고들은 의도적으로 사안이 마치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까지는 공개화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하여 이번이 처음이라고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非)정부기구가 정부에서 돈을 받는다면 곤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세계적인 추세일 뿐더러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법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고 시민참여의식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것도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의 관계자의 입을 빌어 위와 같은 보도를 함으로써 공정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편파적이고 왜곡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 조선일보가 1994. 7. 26.자 조선일보를 통해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 “민관 협력의 새로운 운동방식”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현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 5) “총선시민연대 가입 등으로 공개적 정치활동을 해 온 일부 시민 단체들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 언론정책을 앞장서 지원해 온 언론단체들도 상당한 예산지원을 받았다”

이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중요한 전제 사실의 보도를 생략 함으로써 인과관계가 없는 두 개의 사실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배치, 보도하고 있습니다.

- 6) “이들에 지원되는 예산만 한 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 예산 지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

피고들은 위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이 예산 지원의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의 기준을 알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에도 피고들은 마치 예산지원의 기준이 없는 것처럼 표현을 써서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은 원고들이 권력과의 유착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나) 9. 1.자 3면 본문 기사(갑제3호증의 2 참조)

1)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

피고들은 실제 총선연대 참가단체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낙선운동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일부 사실만 취사선택하여 문구를 교묘히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이 마치 낙선운동에 사용되었거나 정부가 낙선운동 또는 언론운동을 한 시민단체를 직접 지원한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 2004년 총선연대와 그에 참가한 원고들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그 결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이 부분을 신문의 한 면 전체를 차지하는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는 독자들 중에는 기사의 내용까지도 꼼꼼히 정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 외에는 제목만을 훑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사의 제목은 기사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이 보통인데도, 피고들은 원고들이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을 하였다

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민단체인 원고들의 중립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을 뿐더러 원고들 활동의 정당성과 역사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 2)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시민단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하물며 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지원 받은 뒤 정치활동, 특히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도덕성이 결정적으로 불신 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 비판 관계는 현대민주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모델로 권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돈은 단체운영을 위한 경상비와 같이 시민단체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직접 할 수 없는 조사, 연구, 공공서비스 등의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그 수행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원고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모두 그와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지향하는 활동방향과 정부의 재정지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위와 같이 특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피고들은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여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성격을 왜곡하였고, 결국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부정한 지원을 받는 듯한 표현을 함으로써 원고들

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시민단체가 받는 정부 보조금과 피고들의 총선연대 활동은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총선연대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있을 지 몰라도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성격에 대한 보도를 생략한 채 보조금 지원과 총선연대 활동을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9. 1.자 2면 박스기사-어떤 질문에도 답 못해(갑제3호증의2 참조)

위 제목을 통해 피고들은 이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원고들의 총선연대 활동 또는 언론운동에 대한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라 함)이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라 함)가 피고 소속의 기자에게 답변을 하지 못했거나 떳떳하지 못하게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민언련은 1998. 최장집 교수에 대한 월간조선의 사상검증 사건 때부터 피고 조선일보와의 일체의 취재를 거부해 왔으며, 2000.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원고 문화연대를 포함한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안티조선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위 원고들은 조선일보와의 어떠한 취재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에 관한 취

재에 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시 피고 조선일보 담당 기자의 취재 요청에 대하여 원고 민언련의 담당자는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어떤 취재와 기고 요청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원고 문화연대의 담당자는 “문화연대는 안티조선운동을 하고 있으며 ‘조선일보의’ 어떤 취재에도 응할 수 없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즉, 위 원고들은 어떤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질문의 ‘주체’를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전체의 사정은 숨긴 채 이를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는 표현만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위 원고들이 피고들의 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거절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고, 이로 인하여 마치 원고들이 무언가 캉기는 것 이 있어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위 기사에서 원고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답변을 한 것처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피고들 소속의 기자로부터 위 원고소속 상근자나 활동가 누구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피고들은 하지도 않은 취재를 한 것처럼 하여 허위 보도를 하고, 나아가 위 원고는 정부로부터 ‘매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며,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시 응모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뿐인데도 피고들은 마치 위 원고가 매년 정부로부터 3,000만원 가량을 일률적으로 대가 없이

지원 받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위 원고의 중립성과 도덕성을
훼손하였습니다.

(라) 9. 1.자 3면 기사(갑제3호증의 3 참조)

피고들은 위 기사에서 원고 민언련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위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수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 받아 정권 비판신문에 대한 공격에 앞장선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위 원고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조로 지급된 것이지 위 원고들의 활동방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원고 민언련과 언개련의 입장이 정부와 일치되는 면이 있을 수 있고, 위 원고들의 주장 중에 피고들을 포함한 일부 신문에 비판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문시장을 포함한 언론개혁이라는 위 원고들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 정부의 보조금 지원 때문이 아닙니다. 원고 민언련과 언개련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사업의 소요경비를 지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이 정부가 위 원고들에게 수억을 “집중지원” 했다거나 위 원고들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로서, 원고 민언련과 언개련은 이러한 피고들의 보도로 인하여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마) 2004. 9. 2.자 31면 사설(갑제3호증의 5 참조)

1) “이번 국회 자료로 이들 단체들이 정부의 돈을 얻어 쓰면서 이런 정치활동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났다”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시민단체의 활동방향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피고들은 그러한 사실은 숨긴 채 마치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정치활동을 한’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2) “권력과 시민단체의 유착은 권력이 먼저 돈으로 유혹했는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자신의 활동과 정부지원을 맞바꿨는지 애매할 정도로 깊고도 어두컴컴한 단계이다”

이 표현에서 피고들은 사설에서 언급된 원고들이 권력과 유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대전제사실로 하여, 누가 먼저 유혹을 했는지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3) “민언련과 언개련은 권력을 비판하는 비판신문을 비판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단체다. 신문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자거나 판매부수가 많은 신문의 주주 지분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이들이 먼저 꺼내고, 정부 여당은 이런 여론을 따라가는 척하는 위장 수법을 써왔다”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문시장 개혁의 내용은 현재의 정부와

어떠한 사전교감도 조율도 없습니다. 이는 이 정부 출범 전부터 꾸준히 주장되어 온 내용이며, 특정신문을 겨냥한 것도 아닙니다. 원고 민언련과 언개련이 피고들의 언론보도를 모니터하고 비판하는 기준은 피고들이 ‘정부를 비판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피고들의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지,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였는지’ 하는 점에 있었으며, 시민단체들이 현 정부와 어떠한 모의나 논의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들은 단정적으로 정부와 위 원고들이 사전에 함께 협력하여 권력비판신문(피고들을 지칭하는 듯 함)을 죽이기에 앞장서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4) “이 중 한 단체는... 1억 3,000여만원을, 또 다른 단체는 언론재단으로부터 4,000만원을 각각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의 왜곡보도에는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이들이 비판신문에 대한 비방과 법적 탄압에는 선봉대 노릇을 해 온 배경이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원고 민언련과 언개련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위 원고들의 활동방향은 무관함에도 피고들은 마치 위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그 대가로, 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소위 비판신문에 대한 비방에 앞장서고 있다고 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한편, 위 원고들은 신문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원고 민언련의 경우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하게 신문·방송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 영역을 인터넷 언론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고 민언련이 2004년 들어 8월까지 발표한 방송 관련 논평 및 모니터 보고서만도 30여 편에 이르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원고들이 ‘방송의 왜곡보도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닙니다.

- 5) “적지 않은 시민단체들이 권력 예비군의 중간 집결지나 이권 추구자의 잠복 장소로 타락하게 된 것이다.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시민단체의 상당수가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빗나간 풍토도 이런 배경에서 뿐이진 것이다”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위 ‘적지 않은 시민단체들’은 곧 낙선운동을 하거나 언론개혁 운동에 종사해 온 원고들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합니다. 피고들의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은 어느새 ‘권력 예비군의 중간집결지나 이권 추구자의 잠복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고들은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시민단체도 언론도 반드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정확하게 비판하는 것이 시민단체인 원고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한편 피고

들은 원고들이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긴 바 없고, 정부의 정책 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6) “등뒤로 권력과 손을 잡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사실상의 권력외곽단체나 관변단체들을 골라 내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피고들의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은 ‘등뒤로 권력과 손을 잡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사실상의 권력외곽단체나 관변단체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조금을 근거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받는 보조금과 원고들의 활동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거듭 살핀 바와 같습니다.

(바) 소 결론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그 발언권이 보장되나, 그 기사가 특정단체나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그룹을 비방, 모함하려는 방향으로 쓰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어떤 사실의 서술뿐만 아니라, 우회적인 방식으로 어떤

한 사실을 암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사실(FACT)의 서술뿐 아니라 특정문구의 연결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들은 그 목적의식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기사배치로써, 그 목적의식은 바로 중립적이어야 할 시민단체가 금전적 뒷거래를 통해 권력에 유착해서 정파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낙선운동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피고들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사실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목적성을 가지고, 취합된 여러 사실들 중에서 기사의 의도와 부합되는 사실을 부각하고, 그에 반하는 사실들은 생략하거나 또는 관련성이 없는 두가지 사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시민단체들이 권력과 야합하여 정치활동을 하거나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들은 기사에 언급된 각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국민주권주의의 하나의 숭고한 행사방식으로 평가되었던 낙선운동의 이념과 그 취지를 손상시켰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개별적인 기사내용들 또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각 기사에 언급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전체적인 의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3. 위자료 청구 내역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편파, 왜곡, 허위 보도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생명인 중립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시민단체인 원고들의 중립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원고들은 향후 정부비판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피고들은 우리나라에서 제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신문으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합니다.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단체는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란 처음에 신뢰를 얻기 보다 더욱 어려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들의 위 보도는 2004. 9. 1.자 조선일보에서는 1면 머리기사를 포함하여 3면에 걸쳐 4개의 기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졌고, 2004. 9. 2.자 조선일보에서는 1면 머리기사와 사설을 활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의 형태를 띠고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들의 위 보도 이후 다른 언론들 역시 앞다투어 맹목적으로 피고들의 보도 내용을 답습한 기사를 보도하였는 바(원고들은 이에 대해서도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그러한 점에서 비추어 보아도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

가 있는데,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원고 2004 총선시민연대는 금5억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금 5,000만원을 청구합니다.

4. 맷음말

이와 같은 사유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총선연대에게는 금5억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 | | |
|----------|-----------------|
| 1. 참고자료1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 1. 참고자료2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의1 | 2004총선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문 |
| 1. 갑 제1호증의2 | 등기부등본(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 1. 갑 제1호증의3 | 고유번호증(광양환경운동연합) |
| 1. 갑 제1호증의4 | 고유번호증(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 1. 갑 제1호증의5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녹색연합)
- 1. 갑 제1호증의6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1. 갑 제1호증의7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문화연대)
- 1. 갑 제1호증의8 등기부등본(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1. 갑 제1호증의9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언론개혁시민연대)
- 1. 갑 제1호증의10 등기부등본(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1. 갑 제1호증의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여수기독교청년회)
- 1. 갑 제1호증의1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 1. 갑 제1호증의1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1. 갑 제1호증의14 등기부등본(전북여성단체연합)
- 1. 갑 제1호증의15 등기부등본(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1. 갑 제1호증의16 고유번호증(참여자치21)
- 1. 갑 제1호증의17 등기부등본(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1. 갑 제1호증의18 등기부등본(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 1. 갑 제1호증의19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환경운동연합)
- 1. 갑 제2호증의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조선일보사)
- 1. 갑 제2호증의2 등기부등본(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 1. 갑 제3호증의1 조선일보 2004. 9. 1.자(1면)
- 1. 갑 제3호증의2 조선일보 2004. 9. 1.자(3면)
- 1. 갑 제3호증의3 조선일보 2004. 9. 1.자(2면)
- 1. 갑 제3호증의4 조선일보 2004. 9. 2.자(1면)
- 1. 갑 제3호증의5 조선일보 2004. 9. 2.자(31면)
- 1. 갑 제4호증의1 디지털조선일보 홈페이지 출력물(2004. 9. 1.자)
- 1. 갑 제4호증의2 디지털조선일보 홈페이지 출력물(2004. 9. 1.자)

1. 갑 제4호증의3 디지털조선일보 홈페이지 출력물(2004. 9. 1.자)
1. 갑 제4호증의4 디지털조선일보 홈페이지 출력물(2004. 9. 1.자)
1. 갑 제4호증의5 디지털조선일보 홈페이지 출력물(2004. 9. 1.자)
1. 갑 제4호증의6 디지털조선일보 홈페이지 출력물(2004. 9. 2.자)
1. 갑 제5호증 조선일보 1994. 7. 26.자 기사
1. 갑 제6호증 총선연대 회계 내역
1. 갑 제7호증 2003년 정부지원금 실태 정보공개 자료
1. 갑 제8호증의1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1. 갑 제8호증의2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출력물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소장부본
 1. 납부서
 1. 위임장
 1. 범인등기부등본

2004. 9.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 범 석

정 연 순

유 기 성

백 승 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